

인터넷 윤리 관련 법과 제도

-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 및 사이버폭력 방지를 중심으로 -

특집
02

목 차

1. 서 론
2.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 법제도 현황
3.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4. 결 론

박종연 · 서경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서 론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 블로그 등 개인홈페이지 운영,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친구 사귀기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지하철 여성 사건(일명 개똥녀 사건), 연예인X파일 유통은 네티즌의 부적절한 인터넷 이용행태와 그로 인한 역기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우리 인터넷 문화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등 해외언론과 미국 블로거들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서 한국의 개똥녀 사건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이 사건은 최근 한국 인터넷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 사건으로 인터넷이 시민저널리즘의 재판장 즉, 우리 이웃이며 친구인 네티즌 다수가 빅부라더(Big Brother)의 역할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문제를 일으

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이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사이버폭력으로 지칭되는 사이버상의 폭력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 법제도 현황

2.1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현황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확산 등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불법·청소년유해정보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팸메일(음란), 모바일서비스(무선인터넷), 화상채팅, P2P서비스, 매치메일서비스, 비공개 카페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경로

〈표 1〉 연도별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1995년~2005년 6월)

(단위 : 건)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합계
심의	2,032	5,655	14,016	17,108	29,607	23,477	25,210	32,221	79,134	69,292	56,585	354,337
시정요구	598	2,137	6,346	12,682	19,729	15,440	21,502	11,033	18,031	34,035	17,144	158,677

가 다양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도별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1]을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유해한 정보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2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 법제도

전기통신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 등 건전한 정보윤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련 법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익명성, 신속성 등 인터넷의 특성에 의해 일반 폭력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대응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2005년 5월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9월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익명성에 의한 피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토론회'와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해 관련 법개정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 관련 제도는 심의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인터넷내용등급제, 청소년권장사이트제도 등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995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를 통하여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불법통신 근절 및 건전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유·무선 인터넷, 실시간 전화 정보서비스,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과정은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자체 모니터링을

〈표 2〉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 관련 법률 주요내용

관련 법률	주요 내용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의2(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와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 마련을 요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불법통신의 금지 등 제53조제2항: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재한 등의 명령권 행사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업무내용 규정 동법 시행령을 통해 불법통신의 취급금지명령 등의 요청,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 내용 등을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동법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고시 제42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동법시행령 제21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의 규정 기타, 사이버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정보삭제요구권 등을 규정
청소년보호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전기통신상의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를 결정

심의과정	심의대상인지	위원(회)상정	심 의	결과통보	회신접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검색 ■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 전문위원회 ■ 상임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정 -적합 -부적합 : 시정요구결정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및 결정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과 회신접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사안에 따라 각 위원(회)상정 ▶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사안 심의 -분기별 개최 ▶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인 심의 -월1회 개최 ▶ 상임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효율적 심의 -심의기준 적용이 명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요구 유형 1. 경고 2. 해당정보 삭제 3. 이용정지 4. 이용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기통신 사업자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결정취소 통보 	

(그림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과정

통한 불건전정보 검색 등을 통하여 심의대상을 인지하고, 심의안건의 유형에 따라 3개의 전문위원회에 의한 심의와 상임위원회에 의한 약식심의 절차를 두고 있다. 제1분과 위원회는 사회질서 위반 정보를 심의하며, 제2분과 위원회는 미풍양속 저해 정보를, 제3분과 위원회는 무선인터넷, 게임정보, 전화, 위성통신을 통한 정보를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해한 전기통신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관리활동도 하고 있다.

자체 모니터링과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로 신고된 심의대상 정보의 경중에 따른 위원회 안건 상정과 심의·의결, 결과처리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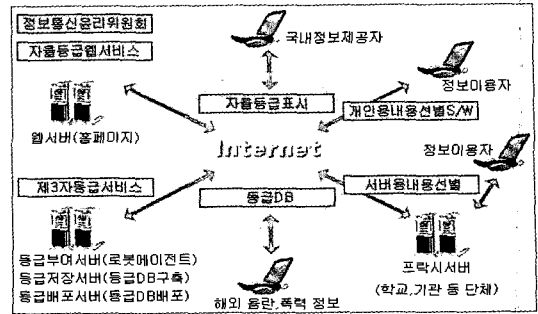
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이하 '청소년유해정보')하고 있으며, 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시하고 있다. 고시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를 유통시키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의무(제42조의2)'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도모하고, 청소년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2004년 12월 30일)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이용자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3월 동법제42조의3에서 규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대상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의 기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인터넷내용등급제(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란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S/W를 이용하여 청소년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특정기관이나 차단S/W 회사에서 결정한 차단목록(Black List)에 의해 일률적으로 인터넷 정보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불건전정보 차단방식과 달리,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과 성인의 불 권리를 보장한다. 즉,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S/W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와 정보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이 점에서 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는 "검열없는 자율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지니기도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 9월부터 인터넷 정보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자율규제라는 큰 틀 속에서 국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등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해외의 음란·폭력정보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자에게 내용선별S/W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정보제공자에게는 자율등급표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www.safenet.ne.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표시된 등급을 인식하여 특정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내용선별S/W



(그림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SafeNet) 운영체계

개발을 위해 2001년 2월 사업체를 선정하여 7월에 개발을 완료하였다. 내용선별S/W는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와 정보이용자가 인터넷상의 정보내용에 대해 적정 이용수준을 정하여 정보제공자 혹은 제3자에 의해 표시한 등급정보를 선별(Filtering)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이다. 이와 같이 개발된 내용선별S/W는 시장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민간제품의 개발 유도를 위해 기술이전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2000년 4월부터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우수 사이트를 발굴·소개하고 정보제공자들의 우수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권장사이트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청소년푸른꿈사이트 홈페이지(<http://www.iteennet.or.kr>)에서는 '청소년권장사이트' 목록소개 이외에도 건전한 정보이용 및 인터넷 관련 청소년 종합정보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권장사이트' 실시간 접속프로그램 및 '청소년권장사이트' 목록집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3.1 사이버폭력의 실태

특히 최근들어 지하철 여성사건(일명 개똥녀

사건), 연예인X파일 유통 등 인터넷상의 무차별적인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주요 피해사례는 대부분 게시판, 댓글, 퍼나르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표 3〉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사건명	일시	내용
나체시위 사건	2005. 8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생방송 중 모 밴드가 나체로 시위를 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
개동녀 사건	2005. 6	지하철에서 애원건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여성 사진 유포
서모씨 자살사건	2005. 5	딸이 남자에게 버림받아 자살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이 해당 남성을 추적해 인터넷에 실명 공개
체벌여교사 자살사건	2005. 4	체벌 혐의를 받은 여교사가 자살하자 체벌 사실을 알렸던 학생이 가출
신생아 학대사건	2005. 4	간호사들이 자신의 흠피에 올린 신생아 학대사진이 유포
트위스트킴 사건	2005. 4	연예인 트위스트킴이 음란사이트의 운영자로 몰려 피해
연예인 X파일	2005. 1	유명연예인 99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미확인 사실 유포

최근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미확정의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

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몰래 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 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계자료[1]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사이버폭력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17,2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는 최근 5년간 총 15,207건의 피해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보통신망상의 사이버폭력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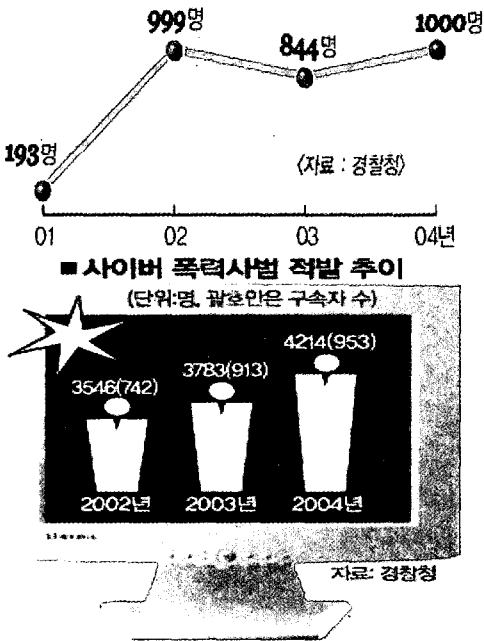
사이버 폭력이 심화되면서 검·경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사이버폭력 사범은 매년 연평균 8.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피해내용 통계 (단위 : 건)

구분	계	피해 내용				접수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상담	신고
2001	1,054	278(33)	204	22	550	-	1,054
2002	3,616	1,248(115)	224	53	2,091	442	3,174
2003	4,217	1,916(894)	557	95	1,649	3,216	1,001
2004	3,913	2,285(979)	322	81	1,225	3,913	0
2005. 6	3,398	2,228(735)	284	117	769	3,398	0
합계	16,198	7,955(2,756)	1,591	368	6,284	10,969	5,229

최근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지방법원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 관계없는 대학생 O씨를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O씨가 관련자인 것처럼 신상정보를 올린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최근 4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처벌 건수



(그림 3) 사이버 폭력사범 적발 및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처벌 건수

또한 서울남부지법은 사귀던 애인 O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지난 2005년 3월 이 남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 “그 따위로 살지 마라, 깊은 관계였다”라는 등의 글을 남기고 또 A씨에게는 휴대전화로 “청부살인을 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한 달 동안 100여 차례나 보낸 공익근무요원 윤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4].

현재 대부분의 주요 포털사이트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정보게시를 통한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금지의무를 이용약관1)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게시물은 사전통지 없이 삭제, 등록거부 하거나 해당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자격의 박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 유리한 내용을 정한 약관을 채택하여 우위를 유지·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이용약관은 금지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법적 책임은 오직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하고 있음에도, 해당정보의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약관의 내용도 애매모호한 표현과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함으로써, 약관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들은 자체적으로 고객센터,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이트의 경우 피해신고 및 게시물 삭제 요청이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2) 그러나 각 사이트 신고센터 등의 직무유기나 느장대응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자단체, 검·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유기적 연계 시스템 미비하다는 점과, 포털사이트 등 OSP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준이 법제도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아, 사이버폭력행위의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2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1) 네이버 이용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및 제14조(게시물의 관리), 다음 이용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및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등 참조.
- 2) 최근 '포피모(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 등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신고센터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포털들이 폭력정보 등을 방치하여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주요 포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추진중이다.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이용자의 의식 전환과 사업자의 자율 규제로 사이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와 병행하여 사이버폭력의 최소화 및 폭력 정보의 확산 방지,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책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이버폭력의 직접적인 행위자는 이용자이나 사업자들도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사이버폭력의 발생 및 해당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사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사안별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³⁾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법(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과 형법상의 일반 법리에 의하여 해석하고 있다⁴⁾.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만으로는 OSP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OSP의 책임을 법제화하되, 이 문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제공자에 국한된 문제이므로 정보통신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유형을 불문하고 정보통신망 상의 모든 정보나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OSP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정보 전반을 규율하고 침해정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삭제 조치 등을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연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상에는 게시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운영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를 불문하고 운영자 등의 책임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모든 사이트에 적용될 수 있는 운영 준칙으로서 '인터넷서비스운영지침'이나 '표준이용약관'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표준 이용약관에서는 군소, 비영리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하되, 의무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법적책임 명시', '신고버튼의 의무적 설치',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한 차단 의무 및 임시조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정보이용자에게 영향력이 큰 일정 기준(매출액, 회원수, 조회수, 방문자수 등)에 해당하는 포털 등 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등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 실명제 등 차등규제 장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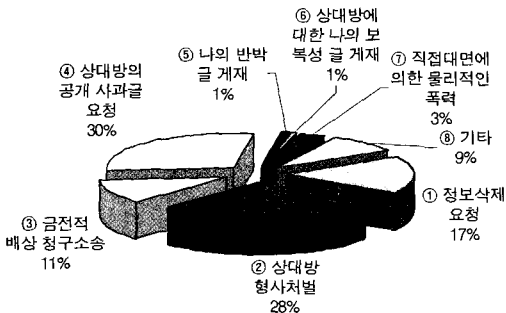
2004년 상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상담이용자 1,9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5]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상대방의 공개 사과글 요청(30%, 53명), 형사처벌(28%, 52

3) 상세한 내용 및 면책요건은 미국의 '통신품위법', 독일의 '연방정보통신사업법', 영국의 '명예훼손법', EU '전자상거래 지침', 일본의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등 참조

4)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법 제77조와 제77조의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명), 정보삭제 요청(17%, 32명), 금전적 배상청구 소송(11%, 20명), 물리적 폭력(3%, 6명), 반박 글 혹은 보복성 글 게재(2%, 3명)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찰, 경찰, 사법기관 등으로 구성된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



(그림 4)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발생시 이용자가 원하는 구제방안

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피해자의 구제에 있어 사법적인 처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쉽게 소송절차를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사법절차보다 간소하면서 금전적 보상, 공개사과 및 해당 정보 삭제 등 피해자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준사법적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분쟁조정제도가 피해신고·상담 기관과 연계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분쟁조정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업무를 실시토록 하며, ISP의 게시물삭제 등의 문제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가 입법 추진하여 2004년 4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했다던 사이버명

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신설(안)[6]은 분쟁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찰 등 사이버폭력 대응기관들이 침해정보의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응기관 간 유기적 연계시스템이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포털사이트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언론매체적 성격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방송사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두어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보이용자의 피해 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직접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인터넷에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표현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개인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까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등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명예훼손 등 정보의 유통방지 및 해당정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의 금지와 관련된 이용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의 특성인 과급성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신속·공정하게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사이버명예훼손분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은 인터넷에서의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을 통한 자신의 의사표현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네티즌 스스로가 정보습득 및 전파이용의 책임자로서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과 진지한 댓글 달기, 네티켓 지키기 등 인터넷 윤리 실천의 자정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법·제도적 대응방안만으로는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를 규제할 수 없으며, 인터넷의 속성상 그 어떤 규제정책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들 및 정보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단체, 사법기관, 정부의 규제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7].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와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 사업자,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가 정보화지수 세계 3위인 IT강국에 걸맞는 따뜻하고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야 진정한 IT강국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통계집, 2000-2005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KIPS IT 인증원, 인터넷윤리, 2005년 1월
- [3] 정 완,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2005년 8월
- [4] 선고 2005고단572 판결(2005. 3. 23), 선고 2005고단1048 판결(2005. 5. 12)
-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년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상담사례집, 2005년 1월
-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4년 4월

- [7] 박종현, 인터넷 유해콘텐츠 현황과 대응방안, 이제는 소프트웨어다-불법 S/W와 유해콘텐츠물 유통의 현실과 개선방안 세미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서울경제신문, 2001년 4월

저자약력



박 종 현

1993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학사)
 199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석사)
 199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박사과정 수료)
 1994년-199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1999년-200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숭실대학교 강사
 2000년-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관심분야 : 인터넷내용규제정책, 인터넷윤리, 정보화정책



서 경 원

2001년 인하대학교 법학과(학사)
 2004년 인하대학교 법학과(석사)
 2005년 인하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2005년-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
 관심분야 : 사이버폭력, 인터넷윤리, 인터넷역기능, 인터넷내용규제